



# 2014년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 변경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비율 변경 등의 사정으로, 구비 일부가 미편성됨에 따라 구비 부족이 예상되어 세부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I 추진배경

- 당초 예산 편성시 영유아 보육법 국고보조율 미확정 및 구비 예산 부족
  - 자치구의 요구사항인 기준 보조율 40% 및 차등보조율 10%를 반영(국:시:구=50:35:15)하여 확정내시 기준 구비부담율 15% 예산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포 ('14.1.28)
  - 기준 보조율 35% 및 차등 보조율 10%(국:시:구=45:38.5:16.5) 통보
  - 구비 일부가 미편성 됨에 따라 구비 부족 예상됨.
-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구비 예산 불용이 예측됨
  - ※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구비 부족분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변경 편성

## II 집행현황

### ■ 201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전망

[단위:천원]

구분	예산내역		집행내역			부족예산(B-A)
	최종내시	편성예산(A)	11월 기준	12월 예상액	집행총계(B)	
총계	16,718,000	16,602,230	14,941,250	1,500,000	16,441,250	
국비	7,523,100	7,523,100	6,723,563	675,000	7,398,563	
시비	6,436,430	6,436,430	5,752,381	577,500	6,329,881	
구비	2,758,470	2,642,700	2,465,306	247,500	2,712,806	70,106

※ 12월 예상액은 2014년 월평균 지급금액의 약 10% 상향 (2014년 1월~11월 월평균 양육수당 지원액은 1,358,295천원)

※ 구비 부족 예상액 70,106천원 변경 필요

## ■ 2014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집행전망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11월 기준 집행액(B)	12월 예상액(C)	집행잔액(A-B-C)
구비	627,200	461,800	76,300	<b>89,100</b>

※ 집행잔액 예상액(89,100천원) 중 가정 양육수당 부족금액인 70,106천원 변경 편성 가능

## Ⅲ 예산 변경 (구비)

[단위:천원]

단위사업	과 목			기정액(A)	요구액(B)		예산액 (C=A+B)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감액	증액	
저출산대책및 건강가정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642,700		70,106	2,712,806
	출산장려를위한 출생아지원			627,200	△70,106		557,094

- 붙임 1. 2014년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 공문 1부.  
2. 2014년 가정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통보 공문 1부. 끝.